국회 세미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❷ 일시 : 2024년 8월 23일(금) 15:00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

፮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최 :
 국회기후변화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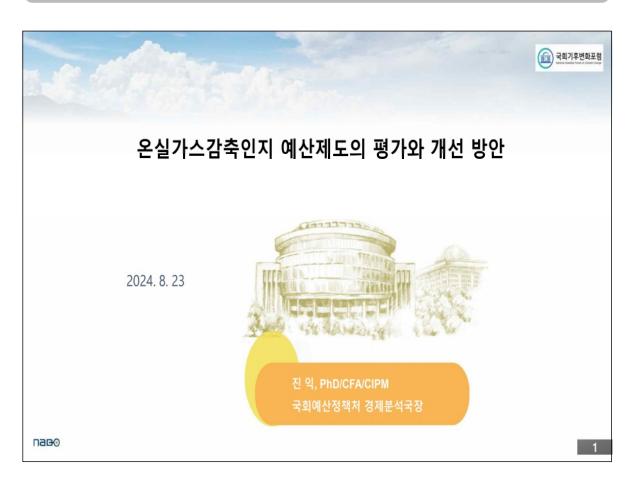
 No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 주관 : 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 | 연구책임의원 김성회 | (정회원) 국회의원 김용태, 송옥주, 염태영, 이소영, 정혜경, 진선미, 추미애, 한병도 | (준회원) 국회의원 강선우, 권향엽,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정재, 맹성규, 박덕흠, 박 정, 박지혜, 박홍배, 배현진, 서범수, 서왕진, 안호영,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연희, 이재강, 이종욱, 이학영, 최형두, 한지아, 허성무

진행순서

- □ **개회식 (15:00~15:20)** * 사회: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 회 사 : 한정애 국회의원(포럼 대표의원)
 - 환 영 사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포럼 의원회원)
 - * 주요인사 기념촬영
- □ 주제발표 (15:20~15:4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 □ **패널 (15:40~16:40) /** 좌장: 김일중 포럼 공동대표(환경정의 고문·동국대 명예교수)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 노동운 한양대학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
 -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 □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16:40~17:00)

▶ 주제발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진 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개요: 탄소중립기본법령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mark>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mark>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결산서의 검토 · 분석
-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분석
-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mark>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mark>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паво

3

개요: 국가재정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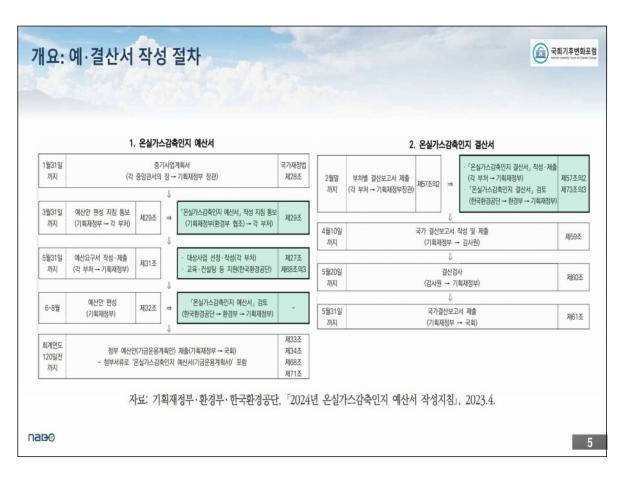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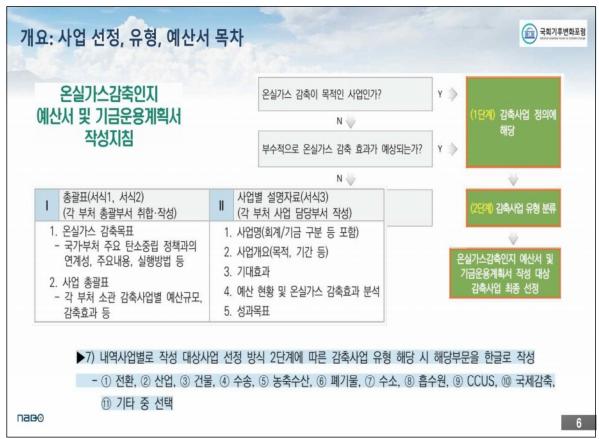
-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이하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 4. 그 밖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паво





개요: 2023년도 결산(1)

국회기후변화포럼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24조1)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 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2023회계연도부터 실시되었다.2)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인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는 20개 기관의 288개1) 세부사업에 대해 11조 8.828억원으로서 정부 총지출의 1.8% 를 차지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인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2022년 9월 1일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 고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인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2024년 5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편,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목록작성 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 계한 10개의 감축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감축사업 유형에 대한 근거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며 전환. 산업. 건물 등과 같이 10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었 다.6) 온실가스감축 부문에 대한 사업 유형 분류는 2023년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유형 기준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부터 재분류되었다.

[감축사업 유형 변경 내역]

연번	개정 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19.10)	연번	개정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3.4)
1	전환	1	전환
2	산업	2	산업
3	건물	3	건물
4	수송	4	수송
5	농축수산	5	농축수산
6	폐기물	6	폐기물
7	산림/CCUS	7	
8	공공	▶ 8	흡수원
9	인식제고/정책지원	9	CCUS
10	시장활용	10	국제감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паво

개요: 2023년도 결산(2)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규모와 구성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자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지출액은 10.6조 원, 사업 수는 615개이다. 2019년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10개 부문(수송, 산업, 전환, 건물, 공공, 인식제고/정책지원, CCUS/산림, 폐기물, 농축 산, 시장활용)과 4개 유형(정량, 정성, R&D, 기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출액으로 보면 수송(3.1조원), 산업(2.7조원), 전환(1.5조원) 순이고, 사업 수로는 산업(140개), 수송(110개), 전환(92개) 순으로 규모가 크다. 정량 사업과 정성 사업의 경 우, 수송 부문의 지출액이 각각 2.1조원, 0.5조원으로 가장 크다. R&D 사업과 기타 사업 의 경우, 산업 부문의 지출액이 각각 0.6조원, 1.3조원이다.

화석 및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경우,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균형감 있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 구성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들 중 하나이다. 관련 내용은 2024년 말 제출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준비. 2025년 제출할 「2035 NDC」 설정 논의 과정에 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는 2024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심의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현실성 높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책임감 있는 정책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Ⅲ-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2023년 결산 기준)

(단위: 개,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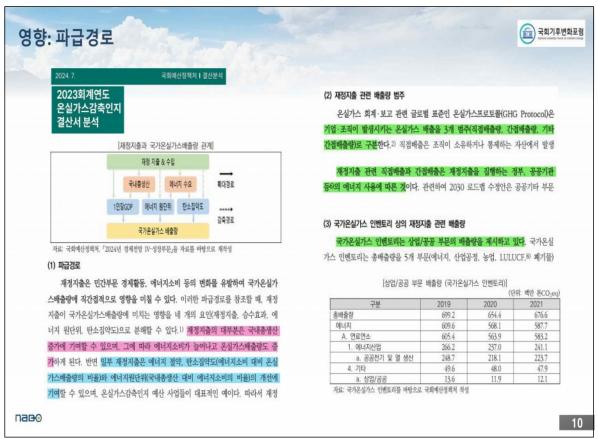
국회기후변화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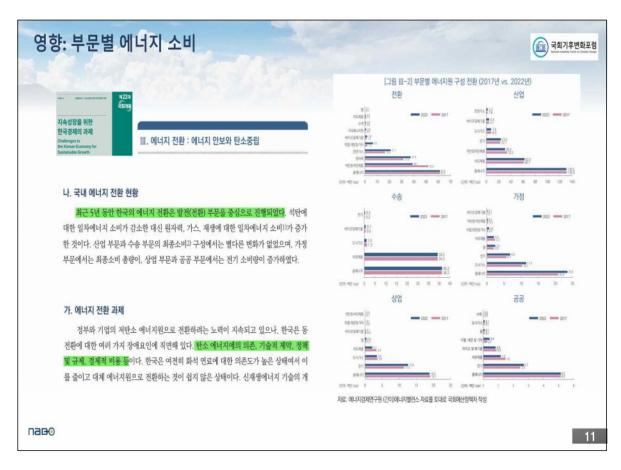
부문	HOLA	지출액				
	사업수		정성	R&D	기타	10,570 3,124 2,721 1,472 796 796 754 478
전체	615	5,071	2,044	1,673	1,782	10,570
수송	110	2,058	544	407	115	3,124
산업	140	535	344	564	1,277	2,721
전환	92	947	56	463	7	1,472
건물	25	324	399	20	54	796
공공	22	794	0	0	2	796
인식제고/정책지원	56	0	458	67	229	754
CCUS/산림	84	250	56	123	48	478
폐기물	47	55	112	21	41	230
농축산	32	81	70	8	9	168
시장활용	7	26	5	0	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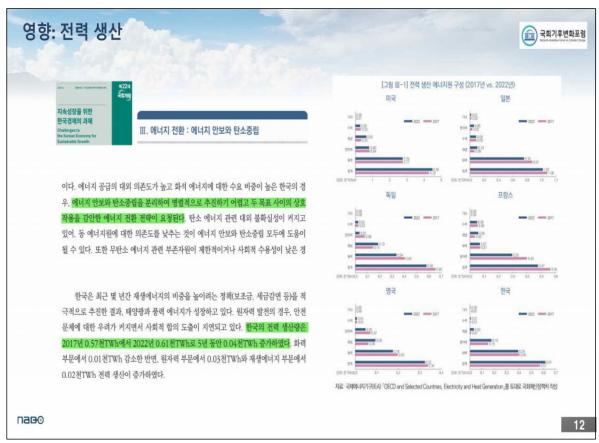
주: 관계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에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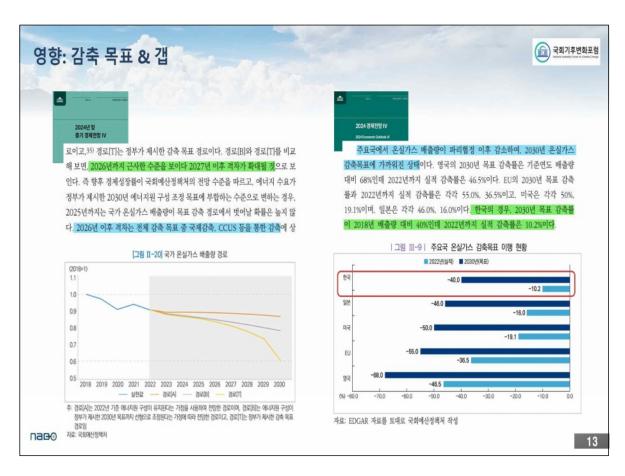
паво











국회기후변화포럼 영향: 감축 수단 2024 경제전망 IV 기준 연도인 2018년 배출량 대비 각 연도별 배출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최 근 5년 동안(2019-2023년) 부문별 누적 변화율을 검토해 보았다. 전환 부문의 누적 변화율은 약 -26.5%, 건물 부문의 누적 변화율은 약 -9.3%, 다른 5개 부 지난 6개년(2018~2023년)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 추이는 아래 그림과 문(산업, 수송, 농업, 폐기물, 기타) 합계의 누적 변화율은 약 -1.5%로 나타났다. 같으며, 두 지표 모두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을 정점으로 동 결과는 최근 5개년 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대부분이 전환 부문과 건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락한 것은 에너지원단위와 탄소집약도의 하락이 1 부문에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인당 GDP 상승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I-13 | 부문별 2018년 대비 비율(2018~2023) → 전한 → 건물 → (산업+수송+농업+폐기물+기타) | 그림 I-15 | 에너지원단위 & 탄소집약도(2018~2023) 0.9 0.8 주: 부문별 2018년 수준을 기준으로 연도별 수준의 비율을 산정함. 2022년 수준은 잠정치이고 2023년 주: 에너지원단위는 실질GDP(십억원) 대비 일차에너지 수요(1,000toe)의 비율로, 탄소집약도는 일차 에너지 수요(1,000toe)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본)의 비율로 산정함 자료: 한국은행, 국가에너지통제종합정보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수준은 전망치임 паво 14

영향: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국회기후변화포럼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축인지 결산서 상의 감축량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제시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은 3.4 백만 톤CO2eq으로,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18.3백만 톤CO2eq 대비 18.7%이다. 전환 부문의 결산서상 감축량 0.1백만 톤CO2eq은 해당 부문 국가온실 가스 감축량 10.2백만 톤CO₂eq 대비 1.2%이다. 2023년 국가온실가스 감축의 절 반 이상이 전환 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포함된 정보만 으로 관련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환 부문 관련 보다 많은 사 비 90.5%이다. 2023년 산업 부문에서 달성한 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성과의 대부 분이 재정사업에 의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부문 주도의 산업 부문 배출량

[재정지출 관련 감축량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011- 4	ti ecoled, w
구분	국가온실가스 감축량(A)	2023년 결산서상 감축량(B)	비중(B/A)
전환	10.2	0.1	1.2
산업	1.1	1.0	90.5
건물	3.1	1.1	34.6
수송	2.8	0.8	29.3
그 외1)	1.0°	0.4	42.1
하게	18.3	3.4	18.7

주: 1) 농축수산, 베기물, 산림/CCUS, 공공 포함

1. pc 최근 5개년 변화 수이를 고려하여 수정한 값임. 2024년 7월 10일 기준 정부의 공식 통계 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값을 사용하여, 항후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계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치 작성

(3) 기타간접배출 추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서 재정지출 관련 기타간접배출량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기 금이 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정 운용 과정에 그 결과 를 반영하려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재정지출의 온실가 스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

그런데 2023년도 결산 시점에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여 재정지출 관련 배출 량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미시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재정지출 관련 기타간

관련 정보의 제약을 감안하여, 재정지출과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토대로 재정지출 관련 기타간접배출량을 추정해 보았다. 앞서 논의한 재

정된다. 3개 항목의 합계는 138.7백만 톤COzeq로, 국가온실가스배출량 636.2백만 톤CO2eq 대비 비중은 21.8%이다.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추정 결과]

(단위: 백만 톤COsea)

구분	2022(A)	2023 ^P (B)	증감(B-A)
직접배출량 (A)	4.1	4.0	Δ0.1
간접배출량 (B)	12.5	11.9	∆0.6
기타간접배출량 (C)	125.7	122.8	Δ2.9
합계 (A+B+C)	142.3	138.7	∆3.6
국가온실가스배출량	654.5	636.2	△18.3

주: p는 수광한 값인. 2024년 7월 10일 기준 정부의 공식 통제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값을 사용하여, 항후 발표될 정부의 공식 통제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자료: 국가온실가스 안텐보리. 에너지몽제원보, 국인제공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화제산정확차에서 작성

15

목차

паво





제도 개요



감축/배출 관련 영향



재정 운용 반영 여건



개선 방향

паво

여건: 총배출량 감축 속도 (mag) 국회기후변화포럼 2024 경제전앙 IV 부의 정책을 통해 해당 감축률이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기 감축 시나 동 결과는 지속적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리오의 경우, 2023년 배출량과 2030년 목표 배출량 사이 차이를 향후 7년간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12) 균등한 양으로 감축해 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연도별 감축률로 환산해 보면, 합의 내용처럼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용량이 확대되면, 생산성 개선 2027년 이전에는 NDC 감축 시나리오 대비 감축률이 강화되고 그 이후에는 감 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배출량 제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시기가 앞 축률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로이다. 무탄소 에너지의 경우, 두 시나리오에서 당겨질 수 있다. 동일하게 향후 7개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선형 경로를 가정한다. |그림 II-6 | 충격(배출량 감축률) | 그림 II-7 | 반응(GDP 성장률) ■ NDC 감축 시나리오 ■ 조기 감축 시나리오 ■ NDC 감축 시나리오 ■ 조기 감축 시나리오 -1.0 -2.0 -3.0 -4.0 -5.0 -6.0 -1.0 -7.0 -8.0 20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여건: 생산활동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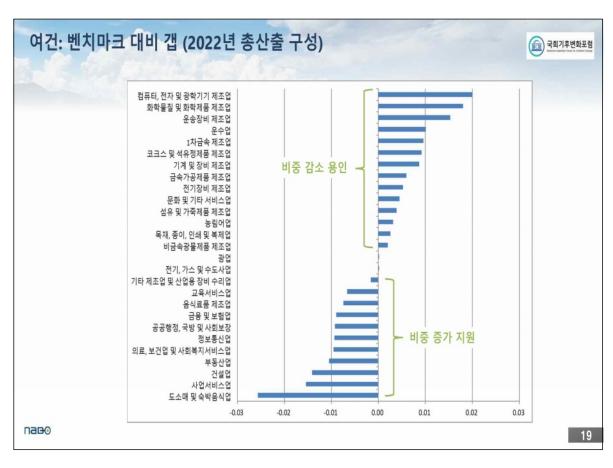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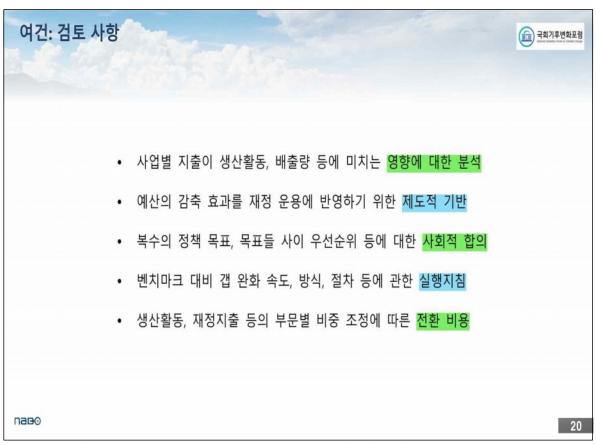
17

- 복합적 정책목표(경제성장 지속, 경제 안정화, 배출량 감축목표 이행 등) 가정
-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참조하여, 생산활동(총산출) 최적 포트폴리오 탐색
- 최근 23개년(2000~2022년) 총량, 구성항목별 비중 등을 대상으로 분석
- 제약조건(부문별 생산활동 비중의 합이 1과 같음, 부문별 배출량의 합이 국가 배출량과 같음) 하에서 도출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벤치마크로 사용
- 2022년 생산활동 항목별 비중에서 벤치마크 비중을 차감하여 갭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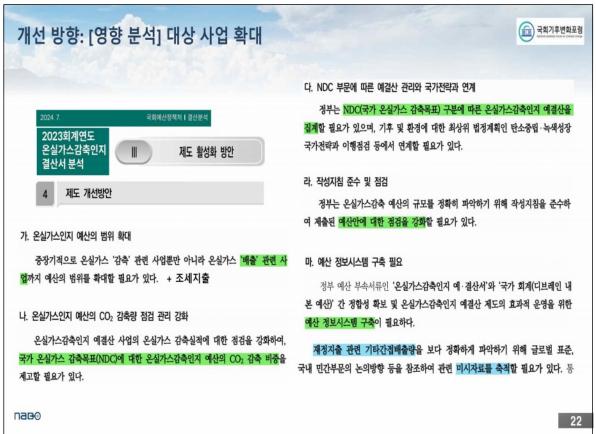
паво

пав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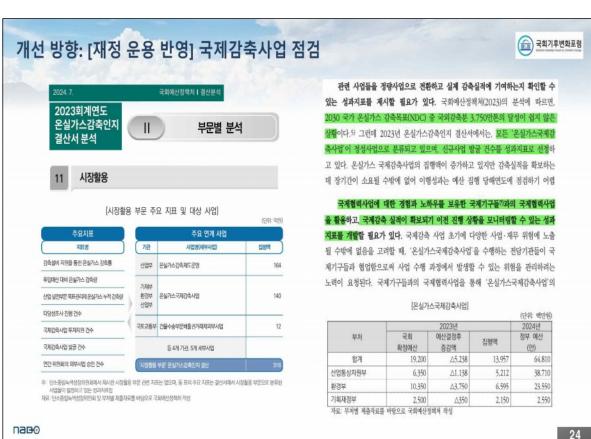














패널 l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l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노동운 한양대학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 용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기후'라는 기준을 주류화(mainstreaming)하여 정부의 예산관련 의사결정에 기후라는 기준을 활용하고, 예산의 기후변화 영향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2022년에 도입되어 2023년, 2024년 두 번의 예산서와 2023년 한 번의 결산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아직 제도 도입의 초기이며 제도 도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성과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에서 1)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과 예산의 규모를 식별해 내고 2)정량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정성, R&D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사업의 예산규모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과 기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후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해서는 지금 매우 한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만 적용되는 사업 선정 기준을 '온실가스 배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항목입니다. 또한 녹색예산제도는 긍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 예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정적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현재 예산과 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 범위도 '조세지출'을 포함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조세지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성과평가와 환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 1)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정에서 긍정적 환류가 있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은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 2)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성과는 사업별로 선정한 이행지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행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일관성있는 검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또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입니다. 이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간 예산의 성과를 당해에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비 완공후에 탄소감축이 발생하지만 사업이 예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4) 이와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현재 부처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고서의 작성, 감축영향의 평가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선정 되는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비용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의 선정과 발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축'사업에 선정되고 예산서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2030 NDC,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온 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대상을 확대한다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사업관리보다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4. 효과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노력 필요

OECD의 녹색예산 도입은 2020년 14개에서 2022년 24개 국가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온실 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 Tagging)을 도입한 국가는 6 개국에서 13개 국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과 국회의 인식도 제고, 투명성 제고가 주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녹색예산을 예산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녹색예산의 기후영향도를 예산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 관심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규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에서 탄소저감의 중요성과 실 질효과를 함께 살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예산 의사결정에서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정보가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되기 시작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전진임
-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향후 각종 분석 및 의사결정에서 일정 수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 다만, 기본적으로 인지예산제도는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사업 예산을 결정할 때 특정한 개념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생각해보면, 예산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성평등한 방식으로 전반적인 예산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즉,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효과를 인지하게 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도 원래의 취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적의 예산을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사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 를 알고 이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그 예산 수준을 정리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규모를 과대 혹은 과소하게 계상했는지의 여부는 인지예산제 도에서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인지예산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배출/중립/감축 사업으로 분류하여 감축량을 추정하고 있어 인지예산제도 본래의 취지에 보다 가깝게 운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 □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총 예산 규모와 그로 인한 감축량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다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동일 목적의 사업에 대해 주요 대안별 예상 감축효과가 얼마나 차이 가 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할 것임
- 최종 선택한 사업의 효과만 다루기보다는 대안이 되는 사업에서 기대되는 예상 감축효과를 비교해야 예산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예를 들어, `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보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예상되는 당해년도 감축량이 75만톤으로 추정된 결과만 제시되고 있어 이것이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음
- 그 결과, 이미 선택된 감축효과가 있는 예산사업은 마치 '전혀 문제가 없는/바람직한' 사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음
 - 더불어 사업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근거도 확보하기 어려움
- 지금처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운용할 것이라면 보다 효율적인 감축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려면 사업별 감축효과를 추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각종 미시자료가 형성·축적되어야 할 것임
- □ 향후에는 감축사업을 보더라도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실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로까지 발전되기를 기대함
- 사업 수, 사업 배정 예산,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업이 어떻게 재배정되었는지 재배정된 사업이 기존보다 얼마나 적절히 선택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논리에 대한 재평가 등이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배출량 산정에 대해 보다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함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작동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조건에 대해

-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견인해야 하는 선행적 역할이 국회의 장기적 공전 사태에서 소멸되었음
 - 예산권과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제안과 감사권이 부여된 실질적인 기후특위의 상설화와 관련한 쟁점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진행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세미나가 반가움
- 토론은 가급적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고자 함
 - 해외사례나 기존의 주요한 정책연구 동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나(도넛 모델에 대한 재정회계 모델은 이미 적용수준에 들어설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대한 트랙커와 같은 시민-기술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음) 이는 현재 한국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는 현재의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지연시키는 효과만 낼 뿐임

1. 현 감축인지 제도의 한계

- 발제의 내용이 현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결산제의 현황과 더불어 주요한 특징을 진단하는데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작 해당 법제와 운영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는 못함
 -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도 개선의 방향'에 초점을 맞춰 3가지 제안하고자 함
- ① <u>결함 있는 시스템 구조</u>: 현행 국가재정법 상의 취지와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취지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 이를테면 탄소중립기본법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감

축'에 초점을 둠. 이는 온실가스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범위의 축소가 아니라 왜곡에 가까움

- 온실가스의 감축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저량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를 감축하는 경로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경로를 함께 고민해야 함
- 그렇게 보면 현재 감축만 보는 예산제도는 역설적으로 다른 사업에 의해 증가되는 유입량에 대한 판단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에 대한 그린워싱 효과를 낼 수 있음
- ② 보이지 않는 할당 권위: 국가 수준에서 최상위 기후위기에 대한 계획은 UN에 제출한 NDC와 더불어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해당 계획은 2050년 / 2030년 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가 연도별로 할당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연도별 감축목표가 부문별로 할당되어 있다면 적어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른 감축량이 각 부서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할당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테면 현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차년도 재정수입에 대한 총액 수준의 할당을 통해서 수평적인 재정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의 '탄소예산'을 각 부처별로 할당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런데 현재 법제도를 보면 이와 같은 계획의 할당에 대한 사항도 없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 인 책임을 지는 정부부처에 대한 명시도 존재하지 않음(원리적으로 보면 해당 사항은 오히 려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의 권위로 명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③ 책임과 권한의 거버넌스 결핍: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다양한 구체적인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절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 기능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기능이 부재함
 - 다른 예산과 다르게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경우에는 사전 공람 기간을 설정해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예산편 성과정에서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인데, 현행 탄소중립위원회가 국가적 수준에서의 합의기구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해당 기능을 재정비해서 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거버넌스 운영 의무와 절차를 명시할 수 있을 것임

2. 개선 방향 제안

- (1) 인지하면 행동하도록 해야: 변화유발형 인지제도의 필요
- 기후위기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가능하며,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 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임
 - 기존의 예산제도가 연간 재정자원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면 인지제 도는 현해 예산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부가적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인지제도는 인지제도 운영의 결과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현행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는 법제도 상의 명문화된 사항을 제외하고 실제 제도 운영의 성과 상 인지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추정할 수가 없음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행위 나아가 예산편성을 표현되는 새로운 정책의 발굴이나 기존 정책과정의 혁신이 유도되어야 함
 - 특히 현재와 같은 작성지침 방식의 매뉴얼화된 작성 방식은, 각 부처별로 각 지방정부별로 자체적인 인지제도 발전과 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하향평준화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임(수 십년 째 재정공시 상 성인지예산의 설명 예시가 남녀 화장실 문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해당 인지제도가 형식적인지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매뉴얼화 방식은 기본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제도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인지예산서 상 포괄적으로 필요한 항목 외에 추가적인 요소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현행 교부금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가급적 모든 예사사업에 적용해야: 어림짐작법의 필요

- 각 부처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축인지 대상 사업이 과소하게 잡히는 이유 중 하나는 감축원 단위의 부재나 산정 방식의 한계에 의한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 는 단위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님
 - 특히 서울시가 법정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송부문의 배출량을 연료판매 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총 주행거리로 측정하는 기준보다 과소 추정하고 있고 비슷하게 온실가스인지 예산서를 만들면서 배출사업이지만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60%가 넘는 사업을 편재하지 않는 일이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각각의 예산사업이 큰 틀에서 온실가스의 배출과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상위범위로 하여 그것이 측정되어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배출 사업이 확대되어도 평가하지 않는 모순이 생김
 - 일반적으로 예산의 성질별 속성에 따라 일정액 당 산출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몇 가지 대표적인 성질적 예산항목의 단위액 당 배출량을 공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어차피 예산 행위는 회계연도에 한정되는 구조인 만큼 개별 사업의 중장기적 효과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차적으로는 해당 예산 지출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이를테면 발생주의적 관점의 온실가스 예산편성이 필요)
- (3) 문제와 정책의 스케일이 맞아야: 탄기본과 인지예산서 간의 연계성 필요
- 탄소중립기본계획 상의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로 구분되고 이는 과학적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간의 책임회피 구조로 나타남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비슷하게 인지예산서의 측면에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러한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사업과 재원의 일차적인 원천인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예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연차별 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투자계획은 당연히 연도별 예산서를 통해서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행정구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스케일의 배출구조를 만들어 내지만 계획과 사업은 대부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움
 - 현행 지방자치법 상 명시되어 있는 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서 특정한 권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회의 역할

- 행위하는 주체가 행동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 또한 권력 구조를 분권화함 으로써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은 (효율성의 요소보다는) 개방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안 그래도 행정부 중심의 한국 권력 구조를 고려할 때 국회가 제2의 행정부 기능을 하는 것처럼 기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대의기구로서 주요한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함
-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상의 온실가스인지예산서의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부처별 / 중앙-지방 정부별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진단 및 권고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점에서 현행 국회예산처나 입법조사처에 준하는 별도의 국회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공동기구를 구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운 | 한양대학교 글로벌기후환경학과 교수

1.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728.6 백만tCO2e.)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의 취지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지예산이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예산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 유용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사업은 사업별 연간 예상(실적) 온실가스 감축량 및 2030년 까지의 예상(실적) 누적 감축량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업별 2030년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방법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30년 감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절대량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지예산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역시 2018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특히 감축효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산과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2018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감축효과를 분석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의 예산(11.9조원)은 국가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3.4 백만tCO2eq.으로서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18.3 백만tCO2eq.)의 18.7%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면 인지예산제가 국가 감축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예산제의 비중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인지예산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전체 검축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예산제와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계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2030년 감축목표와 연계 관점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 적용되는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018년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현재의 방법론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의 예산이나 기금 사업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특히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시 정부에서 제공한 최근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등으로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분석 방법론에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과다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면 전력 관련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시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2018년 계수를 적용하면 과다 추정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 3.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의 예산과 기금 사업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누락되어 있다. 예산과 기금 사업이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특히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적용하여 감축효과를 분석하지만 전력의 수요량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예산과 기금 사업이 전력의 수요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는 각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 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변화가 온 실가스 감축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인 지예산의 경우 인지예산이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친 영향은 1.2 백만tCO2eq.으 로서 전환부문 전체 감축량(10.2 백만tCO2eq.)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아마 전환부문 이외의 에너지 소비부문의 사업이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누락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인지예산 전체의 전력 수요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적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4. 예산과 기금 사업의 비용 효과성 지표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의 예산인 11.9조원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예산을 구분하고,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을 동 예산으로 나누면 비용 효과성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2℃나 1.5℃ 달성에 필요한 온실가스 한계 감축비용(MAC)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달성에 필요한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2020년에 \$40-80/tCO2eq.(2017년 가격), 2030년에는 \$50-100/tCO2eq. (2017년 가격), 그리고 IPCC가 제시한 1.5℃ 달성을 위한 한계감축비용(\$226-385/tCO2eq.)(2024년 가격, World Bank, 2024)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업 예산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김진식 |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제도 개요

- (목적)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
- (법적근거) 탄소중립기본법(제24조), 국가재정법(제27조, 제34조 등) ※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른 국가예산서의 부속서류
- (시행시기) '22년 1월부터 시행, '23회계부터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제출

□ 예·결산현황

- ('23예산) 13개 부처, 288개 사업 제출, 예산규모는 11.9조원(감축예산 9.9조)
- ('24예산) 16개 부처, 294개 사업 제출, 예산규모는 10.9조원(감축예산 10.1조)

(단위: 억원, 개, %)

구 분	'23년(A)	'24년(B)	증감액(B-A)	증감비율(%)
예산 규모	118,828	108,776	△10,052	△8.5
사업 수	288(450)	294(480)	6(30)	2.1(6.7)

· ('23결산) 예산집행 91.5%, 감축효과는 '23년(단년) 344만톤, '30년(누적) 2,672만톤

7 日		'23년	
구 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100
결산 규모	115,502	105,701	91.5

□ 제도개선 방향

- (성과관리 강화) 국가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이행지표 표준화 등
- (감축효과 산정 정확도 향상) 산정방법론 확대 발굴, 배출계수 최신화 등
- (지방재정 확대) 시범사업을 통한 지자체 역량 강화, 기반조성
- (정보시스템 구축) 예·결산서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신뢰성·효율성 향상